

#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 규정

시행: 2024.6.26

제1조(명칭 및 소재지) 본 연구소의 명칭은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(Humanitas Institute for Liberal and Civic Education, 이하 “본 연구소”라 한다)로 하고,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후마니타스 칼리지 내에 둔다.

제2조(설립목적) 본 연구소는 교양교육 관련 제반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, 그 결과를 활용하여 본교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교육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교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정기적인 학술지 발간
- 연구조사 사업
- 교재, 총서, 자료집, 학술 저서, 기타의 교육 콘텐츠 제작
- 연구용역 수행
- 연구자 교육 및 양성을 위한 세미나 및 연구 발표회 개최
-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
- 관련 단체와 유기적 협력
-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
-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

제4조(기구)

①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- 자문위원회
- 운영위원회
- 연구기획부
- 학술교류부
- 출판편집부
- 교육연수부
- 실천교육센터
- 아시아아프리카문화연구센터
- 인문정보센터
- 젠더교육연구센터

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, 부장은 본 연구소의 구성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. 다만, 각 부장 및 부원으로 해당 분야에 정통한 외부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.

③ 실천교육센터와 아시아아프리카문화연구센터, 인문정보센터, 젠더교육연구센터의 운영위원 구성은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

①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연구 및 사업의 기획과 진행
-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추천
- 예산 및 결산
- 본 규정의 개폐 및 본 연구소 내규의 제·개정

##### 5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- ② 위원회는 소장, 상임연구원 및 각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
- ③ 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구성원) 본 연구소에 「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, 연구보조원,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##### 제7조(연구소장)

- ① 연구소장은(이하 '소장'이라 한다.) 본 연구소의 연구, 학술 활동 및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소장은 제2조의 설립목적의 실현 또는 제3조 각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자를 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- ③ 소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한다.
- ④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총당한다.

1. 본교 지원금 및 외부 기부금
2. 수탁연구비의 간접 연구경비
3. 전문 서적 및 교재 출판 수익금
4. 기타 수입

##### 제9조(사업계획 등의 보고)

- ① 소장은 매년 2월 이전에 연구소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# 제10조(회계)

- ①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.
- ②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회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